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23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2월 18일

발 의 자 : 이광성, 김태수, 오현정, 문장길,  
장상기, 황인구, 김경영, 추승우,  
김광수, 유정희, 김기덕, 김제리,  
김정환 의원 (13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이사정산은 수도사용자 등이 이사 등으로 변동될 경우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주는 민원서비스로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에서 이사 당일 즉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“취득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.”고 되어 있어 규정대로 업무처리 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.
- 이사에 따른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계량기 지침으로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”하도록 되어 있는 “사전 신고 조항”을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”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“이사 당일”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0조제2항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”를 “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취득일 10일 전</u>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간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.</p>	<p>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-----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 도사용자 등이 ----- -----.</p>